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9.11)

1. 한국의 WTO 제소 관련

□ [한국 정부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1일 WTO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제소하겠다고 발표¹⁾
- o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소 배경과 관련하여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 조치” 라고 설명함.

□ [일본 정부 동향]

-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3개 소재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유로 한국에 수출되고 있던 반도체 소재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견되는 등, 안전보장상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동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²⁾
- o 일본 정부는 일본의 조치는 일본 국내의 수출관리 운용상의 재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WTO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수조치 등의 무역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o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WTO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향후 양자간 협의의 장 등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보도함.
- (내각부) 스가(菅)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WTO 제소 방침과 관련, “(제소)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WTO 협정에 규정된 절차를 포함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라고 발언함.³⁾

1) 「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정치적동기 따른 차별적 조치(종합) 『연합뉴스』 (2019. 9. 11).
2) 「日本の輸出管理厳格化 韓国がWTO提訴手続き開始」 『NHK NEWS WEB』 (2019. 9. 11).
3) 「官房長官「適切に対応する」 韓国のWTO提訴で」 『日本経済新聞電子版』 (2019. 9. 11).

- (경제산업성) 세코(世耕) 경제산업성 장관은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정합하다 것은 명확하다.” 라고 하면서, 향후 “한국으로부터의 양자 협의 요청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는 입장을 표명함.⁴⁾
- o 한편 닛케이는 세코 장관이 경제산업성 출입기자들에게 “양국 실무자 간에 그 동안 진지한 대화를 쌓아왔다” 고도 주장하면서, 일본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재차 강조하였다고 보도함.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의 일부 언론은 WTO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양국 간 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함.⁵⁾

2. 일본산 공기압 밸브의 반덤핑 과세 WTO 판정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일본 경제산업성은 “WTO 상급위원회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의 반덤핑 과세조치는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절차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서 WTO 반덤핑 협정에 저촉된다고 판단, 한국 정부에게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 고 발표⁶⁾
- o (경위)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반덤핑 과세조치를 실시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 15일 WTO 패널설치 요청을 한 이래 WTO 분쟁 절차가 진행중임.
- o (일본 정부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WTO 상급위원회가 한국 정부

4) 「経産相、「WTOルールに整合」 韓国の提訴に反論」 『日本経済新聞電子版』 (2019. 9. 11).

5) 「韓国、日本をWTO提訴 輸出規制強化は「差別的」」 『静岡新聞』 (2019. 9. 11).

6) 経済産業省, 「韓国による日本製空気圧伝送用バルブに対するアンチダンピング課税措置がWTO協定違反と判断され、是正が勧告されました」 홈페이지 : <https://www.meti.go.jp/press/2019/09/20190911001/20190911001.html> (검색일: 2019. 9. 11).

의 조치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 제6.5조 및 제6.5.1조, 제4.1조에 정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보도함.

- * 일본제품의 수입이 한국산 밸브의 가격하락 압력을 유발한 것인지 적절한 설명이 없어서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덤핑 수입에 따른 가격효과의 입증)에 위반
- * 한국 정부의 조치는 비밀정보의 거래와 관련, 불비(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한 점이 있어서 반덤핑 협정 제6.5조 및 제6.5.1조에 정합하지 않음.
- * 한국 정부가 업계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2개 회사만의 데이터를 ‘국내 산업’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반덤핑 협정 제4.1조 및 제4.1조에 정합하지 않음.

☞ 이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WTO 상급보고서 내용임.

□ [일본 언론 동향]

- 닛케이는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 및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양국의 관계에 한층 더 먹구름을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⁷⁾

3.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관련

□ [일본 정부 및 언론 동향]⁸⁾

- 일본 방위성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18개의 미사일의 분석결과를 공개
- 닛케이의 일본 정부의 대응이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

○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

7) 「WTO最終審、韓国に勝訴、日本製バルブ関税巡り。」『日本経済新聞』(2019. 9. 11).

8) 「ミサイル分析、異例の公表、北朝鮮の直近18発巡り、防衛省、日韓軍事協定破棄の懸念払拭。」『日本経済新聞』(2019. 9. 11).

해 왔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논평

* 그 동안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사일 실탄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았는데, 닛케이는 일본 방위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 일본의 미사일 분석력의 수준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

- 한편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도록 한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